

특 허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4허15950 권리범위확인(디)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지희

변 론 종 결 2026. 7. 15.

판 결 선 고 2026. 7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판원이 2024. 11. 20. 2023당35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(갑 제4, 5호증)

- 1) 명칭: 화장용 롤러 스펀지
- 2) 출원일 / 등록일 / 등록번호: 2022. 1. 18. / 2023. 1. 4. / 디자인등록 제1198560호
- 3)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: 별지1과 같다.

나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1) 원고는 2023. 11. 7. 특허심판원에,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'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별지2 기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'라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심판청구'라 한다).

2)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3당3570호로 심리한 후, "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."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(이하 '이 사건 심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【인정 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가. 관련 법리

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,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(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9후10746 판결 등 참조).

나. 구체적 검토

1) 원고가 2023. 10. 19. 특허심판원에,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'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'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, 특허심판원이 위 심판청구를 2023당3363호로 심리한 다음, 2024. 11. 20. '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, 제2항의 무효사유가 없다'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(이하 '관련 환송 전 심결'이라 한다)을 한 사실, 원고가 특허법원에 관련 환송 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이 2025. 11. 19. '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. 이와 결론을 달리 한 관련 환송 전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'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(특허법원 2024허15943호),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, 위 특허법원 판결의 확정으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 심판청구는 특허심판원에 환송되었고,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5당(취소판결)116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다.'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으며, 위 심결이 2026. 5. 29.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.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지만,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피고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기로 하여, 주

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한소영
-----	----	-----

	판사	박은희
--	----	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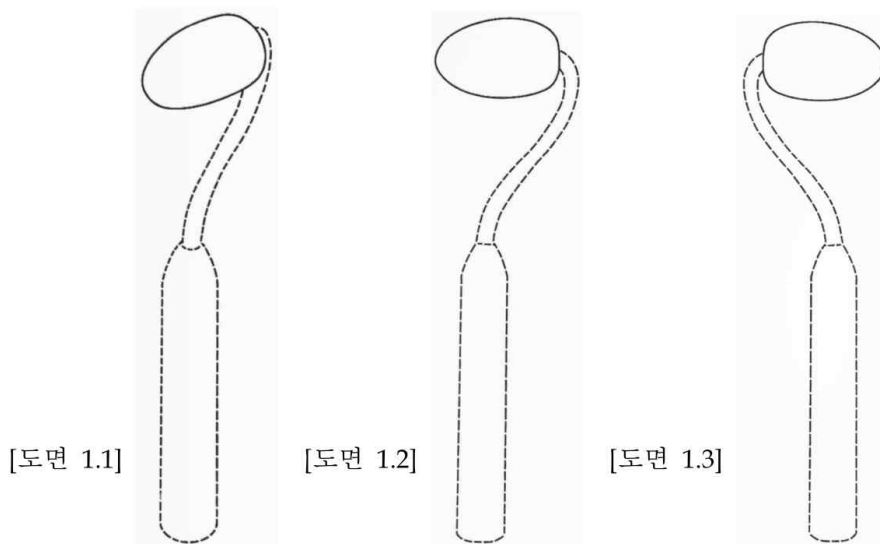
	판사	권원명
--	----	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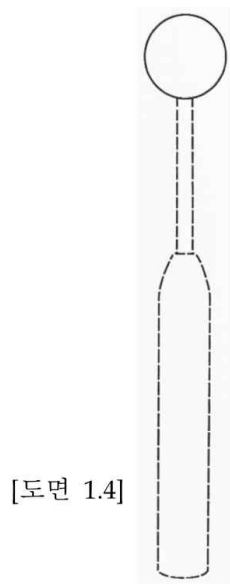
이 사건 등록디자인

【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】 화장용 롤러 스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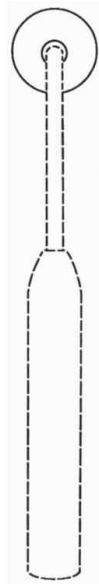
【디자인의 설명】

1. 재질은 스펀지재임.
 2. 본 물품은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스펀지로, 스펀지를 분리하여 교체 가능하고 스펀지를 회전시키며 화장품을 바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음.
 3. [도면 1.1]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, [도면 1.2]는 정면부분, [도면 1.3]은 배면부분, [도면 1.4]은 좌측면 부분, [도면 1.5]은 우측면 부분, [도면 1.6]은 평면 부분, [도면 1.7]은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, [참고도면 1.1]은 본 물품의 몸체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시도면임.
 4. 본원 디자인은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하고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함.
- 【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】 "화장용 롤러 스펀지"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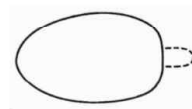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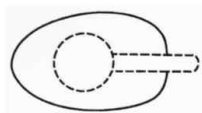
[도면 1.4]



[도면 1.5]



[도면 1.6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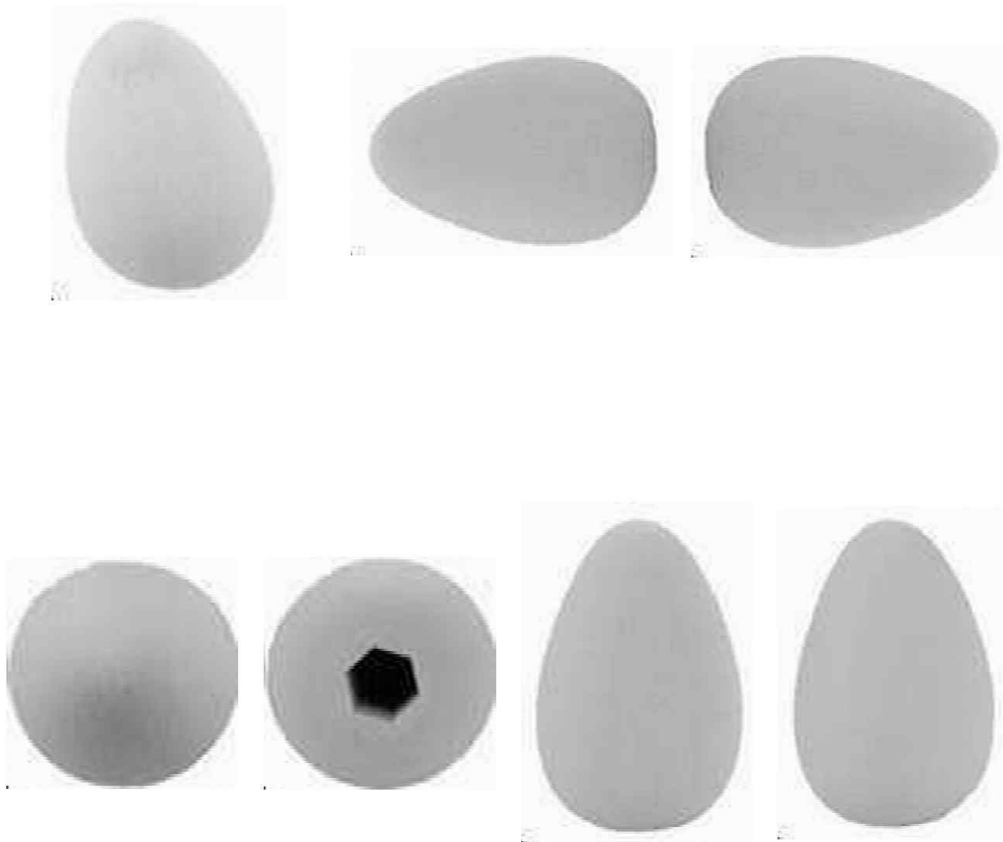
[도면 1.7]



[참고도 1.1]

별지2

확인대상디자인



끝.